

제341회 임시회
제1차 기획경제위원회
2023. 8. 30(수)

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
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의안번호	307
제출일자	2023. 8. 17.
회부일자	2023. 8. 22.



기 획 경 제 위 원 회
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만 나이 정비를 위한 10개 경상북도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경상북도지사

2. 제안이유

가. 만(滿)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을 위한 만 나이 통일법 (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)이 개정·시행(‘23. 6.28)됨에 따라,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“만” 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만 나이를 의미함

나. 이에, 도 조례 중 불필요하게 “만”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조례를 일괄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

3. 주요내용

가. 조례 목적을 규정함(안 제1조)

나. 「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」 등 10개 조례의 나이 관련 내용에서 “만 ○○세”를 “○○세”로 변경함 (안 제2조부터 제11조까지)

4. 관계법령

가. 행정기본법 제7조의2

나. 민법 제158조

5. 입법예고 : 생략

- 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제1항에 따라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 또는 단순한 표현·자구를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입법예고 생략

6. 관련부서 협의

- 가. 규제심사: 규제사무 없음
- 나. 부패영향평가: 부패유발요인 없음
- 다. 성별영향평가: 평가 제외대상
- 라. 비용추계서: 비용수반사항 없음

7. 검토의견

☐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「행정기본법」 및 「민법」의 개정·시행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“만(滿)” 표시를 할 필요가 없어짐에 따라 도 조례 중 “만” 표시를 규정하고 있는 10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임

☐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제2조(「경상북도 고령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례」 제2조제1호 중 “만65세 이상인 자을”을 “65세 이상인 자를”로 개정

- 제3조(「경상북도 가업승계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」 제2조제2호 중 “만 50세”를 “50세”로 개정
- 제4조(「경상북도 소규모 고령농업인 농산물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3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개정
- 제5조(「경상북도 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 중 “만 65세”를 “65세”로 개정
- 제6조(「경상북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2호가목 중 “만 70세”를 “70세”로, 같은 조 제2호나목 중 “만 6세 이상 만 18세”를 “6세 이상 18세”로, 별표 중 “만 70세”와 “만 6세”를 각각 “70세”와 “6세”로 개정함
- 제7조(「경상북도 도민안전보험 지원 조례」 제2조제5호 중 “만12세”를 “12세”로 개정
- 제8조(「경상북도 아이돌봄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 중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개정
- 제9조(「경상북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」 제6조제2호 중 “만 12세”를 “12세”로 개정
- 제10조(「경상북도 모자·부자보건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7조제1항 중 “만 19세”를 “19세”로 개정
- 제11조(「경상북도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례」 제15조 제1항 중 “만 14세”를 “14세”로 개정

□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해당 조문이 포함된 도 조례

를 일괄개정하는 것으로서 시의성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됨

- 아울러 이번 조례개정을 통해 정비된 용어는 향후 규칙, 지침 등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개정 및 정비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임